미기획

합리적 재난방송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

송종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목차

- 1 들어가는 말
- 2 재난방송기준 주요 내용
- 3 재난방송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재난방송 요청 급증에 따른 송출 방식 유연화
 - 2)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방송 실시 기준의 개선
 - 3) 획일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 합리화
 - 4) 재난방송 통합법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 4 맺는말

요약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의 중요한 공적 책임으로, 현행 법률은 방송시업자의 엄격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방송 요청이 급증하였으나, 유시한 내용의 캠페인성 재난방송 요청이 반복됨에 따라 방송사의 부담과 시청자의 피로도 역시 커지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재검토 기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즉시',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 없이'와 같은 조항은 방송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막을 활용할 수 없는 라디오방송이나 재난방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방송 등의 매체적 상황을 감안하는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의 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을 통합하는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진흥 중심의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들어가는 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세계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대형 재난과 국지화된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도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재난이 발생할 때,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방송의 대표적인 공적 책임 중 하나이다.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송하는 사업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방송사업자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재난방송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적 책임인 것이다.

이에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은 법률적 의무로 지정되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재난방송 등)는 재난방송을 이행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유형과 상황, 준수사항, 재난방송 매뉴얼의 작성·비치, 재난방송 매뉴얼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이라는 고시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사항을 담고 있으며, 매 3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가 재검토 기한이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는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성을 반영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해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방송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재난방송 운용을 위한 규제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재난방송기준 주요 내용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이하 재난방송기준)」은 2014년 1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마지막 개정은 2021년 7월이었고, 올해연말까지 재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난방송기준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목적)에서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다는 제정 취지가 담겨 있다. 제2조(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제3조는 재난방송 등의 대상으로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있다.

재난방송기준 제4조는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조항인데, 제1항은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방송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 요청받은 즉시 실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요청받은 즉시 실시"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매체별 특성이나 편성 상황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제3항은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통위가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해야 한다고 하고 있 다. 다만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항을 조정해서 방송할 수 있다는 단서 조 항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방송 등의 실시에서 빠짐없이 방송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재난 등 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재난 등의 명칭, 발생지역, 관련 행동요령, 경보발령 기관 등 5가지이다. 제3항의 내용 또한 매체별 특성과 편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온 대표적인 조항이라 하겠다.

제4항은 결과 통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5항은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할 경우,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PP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과 일반 국민이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경보음 송출,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6항과 제7항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PP 사업자가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될 경우 국민행동요령을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과 재난방송을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방송해야 한다).¹

이상에서 살펴 본 제4조는 재난방송 등의 준칙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제5조(사생활 보호)와 제6조(취재질서 유지), 제7조(취재직원 보호)는 재난방송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취재 원칙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8조(재검 토기한)는 3년 마다 고시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 재난방송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난방송 요청 급증에 따른 송출 방식 유연화

정부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 종편·보도PP 사업자에게 요청한 재난방송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전후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7년부 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324건 정도의 요청이 있었던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 년에는 1,427건으로 324건 대비 4.4배가량 급증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928건과 941 건의 재난방송 요청이 있었다. 즉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이전 3개년 평균 대비 이후 3 개년 평균은 약 3.39배가량 증가한 것이다([표 1] 참조).

[표 1] 재난방송 요청건수 현황

(단위 : 건)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평균
요청건수	277	390	305	324	1,427	928	941	1,099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참조

¹⁾ 현재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과 종편·보도PP 사업자의 재난방송 등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노력의무를 명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4항에 신설하고,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노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동법 제40조의2제4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제21대 국회 기준)

물론 재난방송 요청 건수는 재난 발생 빈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재난이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2019년 12월부터 자연재해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확대하기로 의결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재난방송 요청이 단순히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된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내용이 긴급한 재난 발생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예방수칙 등단순 캠페인성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방송 요청이 4일간 유사한 내용으로 12회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시작되던 시점임에도 코로나19 재난방송 요청은 4회에 그친 것과 비교해 3배가량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요하지 않은 재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이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지 못한 재난방송 요청이 아쉽게 느껴지는 현상이라 판단된다.

[표 2] 반복적 재난방송 요청 사례

	A방송사 재난방송 요청 빈도 · 내용(2020년)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합계			
아프리카돼지열병	3호	3호	3호	3회	12회			
코로나19	-	2회	-	2회	4호			
국외지진정보	-	1회	-	-	1호			
합계	3회	6회	3회	5회	17회			

출처: 한국방송협회(2020), 라디오방송 재난방송기준 합리화 요청서, 일부 내용 재편집

현재 재난방송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제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통 위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를 '즉시' 방송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재난방송기준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인데,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즉시 방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재난방송 요청 건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예방수칙 등 단순 캠페인성 재난방송까지 즉시 송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2022년 7월 상반기 회의에서 과다한 방송문안과 반복적 재난방송 요청으로 국민 불편 및 사업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사회적 재난 중 일부는캠페인, 홍보사항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재난방송으로 의무화하여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재난방송 통보문 및 실시 기준표 개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방송 통보문 개선을 위해, 방송문안 글자 수를 200~250자 이내로 제한하고, 요청 횟수와 간격 제한 기준(시급하지 않은 동일 통보문 1일 3회 이하, 2시간 간격 이상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일상화·장기화된 재난과 국민행동요령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송출이 아닌 자율 송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실시 기준 개선안을 심의하였다. 최종적으로 글자 수 기준 통일이나 '시급하지 않은' 등의 모호한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안 적용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아직까지 재난방송기준 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제1항에서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재난 뉴스와 재난 특보 등을 중심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자막 중심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즉시' 송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재난방송기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의 긴급성이나 중요성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송출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전달과 재난예방 효과가 큰 재난 특보 중심의 재난방송이 실시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방송 실시 기준의 개선

재난방송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제3항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그대로 빠짐 없이' 방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항이라 할수 있다. 텔레비전방송은 프로그램 시청과 동시에 자막이나 화면분할 등으로 방송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난 자막으로 대체할 수 없는 라디오방송

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하고 재난방송 요청사항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반복되는 캠페인성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와 청취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한국방송협회, 2020).^{2, 3}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2022년 6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라디오 재난방송 효율화 방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요청하였고, 라디오방송사가 재난방송 시 재난 피해가 국지적으로 집중 발생하는 태풍, 홍수, 안전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기준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라디오 재난방송 세부 송출 시간에 대해서도 재난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즉시', '3시간 이내', '6시간 이내' 등으로 단계화하는 유연한 대처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역시 '라디오 재난방송 효율화 방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재난방송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지화되는 자연재해, 지역방송의 역할은?>⁴이라는 토론회에서는 지역방송사의 경우 방송권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까지 재 난정보를 그대로 빠짐없이 송출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부산 소재 지역방송이 전남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시군 단위까지 지역명을 일일 이 표기하거나 읽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군 지역명 중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작여건이 어려운 지역방송사나 지역시청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⁵

²⁾ B방송사(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 재난방송 요청 접수 \rightarrow 진행자 "재난방송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재난문자부터 소개합니다" \rightarrow 진행자 재난방송 안내문 낭독(30초) 후 "사실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매일 들어오네요" \rightarrow 프로그램 다시 진행

³⁾ C방송사(라디오) 본방송 후 유튜브 방송 진행 중 진행자가 반복적인 캠페인성 재난방송에 대해 개선 필요성 언급 \rightarrow 유튜브 청취자 댓글 "재난문자…이러면 안 되지만 무감각해져요", "라디오 흐름 끊겨서 진행 잘 안될 듯ㅋㅋ", "급하지 않은 것은 프로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긴급 정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보내면 좋겠네요"

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cdot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공동주최, 한국지역언론학회 \cdot (사)지역방송협의회(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16개 지역 MBC 노동조합) 주관 토론회

^{5) &}quot;부산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재난정보 100건을 처리하다 보면 긴급상황을 전할 여력이 없다.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에게 태풍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특보를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 재난의 명칭과 발효 시각을 안 썼다고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피디저널, 2020,10,14)

이처럼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방송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은 재 난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 핵심정보'를 포함하고 재난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토록 함 으로써 재난 특보 중심의 재난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획일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 합리화

재난방송 실시가 방송사업자의 중요한 의무가 되면서, 재난방송 미실시 등에 따른 처벌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7개 방송사가 재난방송의무 미실시 로 방통위로부터 총 6,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대부분 재난 지역 명칭이 나 발효 시각 등의 정보를 누락한 것이 문제였다.

또 올해 3월 한국방송학회 주최 2024 미디어산업 쟁점과 토론 2차 행사 <지역방송 리디자인> 토론회에 참여한 한 지역방송 관계자는 "재난 통보문을 화면 하단에 흘림 자막 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한 건이라도 놓치면 과태료가 1,500만 원이다."라며 "하루에 10건에 서 많게는 수십 건이 오는데, 지난해 16개 지역MBC만 봤을 때, 50% 이상 감면을 받았는데 도 과태료만 3억 원 정도를 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한국기자협회, 2024,03,21).

현재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에 의거해 1,5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2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유홍식 등(2021)은 현행 감경기준 외에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방식, 매출 규모, 인력 규모, 방송권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별화하고, 감경 기준 역시 구체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성종 등(2020)의 연구에서도 재난방송 과태료 부과가 방송사 규모, 유형, 업종, 방송 내용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방송사의 재정 상태나 인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획일적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형태, 매출 규모, 종업원 수,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경감하도록 하되, 이를 판정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운영토록 하고, 구체적인 경감기준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공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와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제재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상당수가 기술적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다른 법령 위반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 부과 이전에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한 행정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4) 재난방송 통합법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가 중요한 공적 책임으로 인식됨에 따라 의무를 부각하는 엄격한 규제 중심으로 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점차 대형화, 일상화, 국지화되고 있는 재난이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난방송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재난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지원과 진흥이라는 정책수단을 병행하는 체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방송사 재난방송 역량 관련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방송 관계자들은 "당사 보유 LTE가 1대에 불과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동시에 재난 발생시 출동 어려움이 있다.",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장비 부족이 심하고,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 "태풍이 발생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중계차가 한 차례도 출동 못한 적도 있다. LTE로 대체했지만 방송장비 일부가 침수되어 제시간에 특보로 송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운영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인력 충원이나 장비 확보 등 인프라 구축 및 유지는 물론, 정부 주도의 터널·지하철 등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UHD 방송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재난방송 서비스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방송 고도화 지원,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정보제공 강화, 재난 전문 인력의 양성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재난방송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사업 자에 대한 의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율적이고 촘촘한 재난방송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투자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관리법」, 「기상법」, 「지진관측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한 재난방송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 칭)」과 같은 재난방송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각 법률 간 상이한 재난방송 용어, 요청 대상, 주 관방송사 호칭 등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재난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6

4. 맺는말

매년 5월이 되면 방통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방송사 재난방송 현장을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한 안정적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 직원을 격려하고, 방송사의 불편사항은 귀 기울여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언급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실현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2022년에 심의·의결한 재난방송 실시 기준 개선안과 매체별 특성에 맞는 재난방송 기준 등은 아직 관련 법률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처분 기준 개선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방송 관련 통합법의 제정 역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⁶⁾ 방송통신위원회(2021),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p19,

정부도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운영을 관리·감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과태 료 처분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상황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방송의 역할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조속히 발휘될 것 또한 믿는다. 올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재난방송기준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개선방안이 일부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21).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p19

유홍식 등 (2021).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KCC-2021-08).

최성종 등 (2020).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방안 미련을 위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KCC-2020-08).

피디저널 (2020.10,14). "재난방송 기준 너무 높였나... 과태료 받은 방송사들 '억울해'"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23

한국기자협회 (2024.03.21). "재난통보문 과태료만 연 3억".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5494